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

서울고등법원 20192.1.선고 2018노2354판결

주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일시: 2019년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피해자 변호인단

• 김 두 나 변호사

• 김 혜 검 변호사

• 문 은 영 변호사

• 서 혜 진 변호사

• 소 라 미 변호사

• 장 경 아 변호사

• 장 윤 정 변호사

• 정 혜 선 변호사

• 최 윤 정 변호사

001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의 판단기준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에는 별도의 위력 행사가 없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추행 또는 간음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가면 이때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위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업무관계로 인하여 도지사인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

-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여부

-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자는 명시적인 합의, 동의를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 본 사건 전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이성적 관심을 보였거나 이성적인 교감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처해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피해자보다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도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였음
-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위력’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업무부담내지 강도, 특히 그 업무내용에 상시적으로 피고인의 심기(기분)을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임이 더욱 분명함.
-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행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수행비서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도 할 수 있음.

002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차별성

세부 목차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의 판단 차이

3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례의 태도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

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

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례의 태도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판결 등 참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총 10가지 이며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 이후 더 이상 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언론이라 생각하여 언론을 만났는데 즉시 피고인과 G를 비롯한 그 측근들로부터 연락이 와 신변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커 방 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고,

J기자에게 “제가 중요한 건 단순 모욕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처벌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사화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부디 보안 지켜주세요.”, “만일 수사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되지 않는다면 일체의 보도, 정보공유도 원하지 않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문 27 페이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추가 증언의 판단 차이

A:전직수행비서,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피해 직후 전해들은 자

B:전직수행비서,피해자로부터 마지막 피해

사실을 피해 직후 전해들은 자

증인



1. A, B 모두 피해자와 동등한 위치인 수행비서로 지근거리에서 피고인을 모심
2. A, B 모두 피고인에 대한 과거 가진 존경심을 표현하였고 방송 전까지 피고인과 교류하며 원만한 관계 형성을 하던 자임
3. '피고인'도 법정에서 두 사람이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다 진술함
4. 따라서 두 사람이 피고인의 반대편에 설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고, 재판과정에서 이런 이유나 동기 관련 증거가 전혀 현출되지 않았음.

항소심



A, B 진술의 신빙성 인정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측 주장

1심 재판부 인용 '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
+언론

2심 재판부 타당성 없음
근거 존재하지 아니함
문제되는 행동 아님

'순두부'
'와인바'
'미용실'
'호텔만실'
'상화원'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도저히 위력간음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항소심 판결문 40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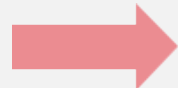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순두부'

피고인 측

피해 직후 당일 아침부터 수행을 하고 식당을 찾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동한 이상 피해자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움

항소심 판단

당시 피고인의 러시아 순방에 동행한 사람들 중 피해자만이 비서실 소속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식사메뉴를 확인, 보고하는 등의 업무는 수행비서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러시아 현지에서 곧바로 피고인의 범행을 폭로하거나 수행비서의 업무를 중단한 채 홀로 귀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이상 비록 그것이 간음 피해를 입은 당일 아침이라 하더라도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식당과 식사 메뉴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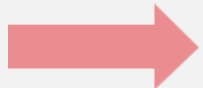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와인바’

피고인 측	피해자	피해자 진술부합증거	피고인 항소심 진술
<p>피해를 입은 당일 피고인과 단둘이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 고 싶어한 것은 피해자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움</p>	<p>피고인이 발레 공연 참관을 취소하 였고 와인바는 취소 이후 공식업무 의 일환이었으며 피고인과 단둘이 아닌 통역인 부부 와 함께 자리하였고, 단둘이 있으려 한 사실이 전혀 없음.</p>	<p>통역관 X의 진술 피고인 본인 진술</p>	<p>“당시 발레 관람 일정이 있었는데, 발레 관람을 하지 않고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으며 현지 가이드 부부와 함께 동석하 였다.”</p>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와인바’

항소심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의 도움을 받아 와인바를 물색하고 피고인을 수행하여 와인바에 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당시 X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시한 사항을 X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실제 피해자와 피고인은 X부부와 와인바에서 함께 나와 호텔로 돌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가 X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게 되었다고 할 것”



피해자가 단둘이 있으려 했다는 증거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미용실'

피고인 측	피해자	피해자 진술부합증거	피고인 진술
<p>피고인 단골 미용실 및 헤어 디자이너를 통해 머리를 한 것은 일반적인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이 아님.</p>	<p>피고인의 단골미용실이 아니며, 단 1번 모시고 갔던 곳이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곳에 불과함.</p>	<p>피고인 본인 진술</p>	<p>“서울 미용실은 1번 간 것이 전부임”</p>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미용실'

항소심 판단

“미용실에 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서 문제되는 행동이 아님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호텔 만실'

피고인 측	피해자	피해자 진술부합증거
<p>운전기사인 Q에게 호텔이 만실이라 하고, 피고인과 단둘이 투숙한 것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p>	<p>전화로 여러 곳에 연락을 하였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투숙가능한 객실이 실제 없었고, 운전기사 객실은 본래 수행비서가 예약하는 것이 아니며 비싼 객실이어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우회하여 전달한 것임.</p>	<p>비서실장 G 증언 전임 수행비서 A 증언 후임 수행비서 M 증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호텔 잔여객실내역</p>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호텔 만실'

항소심 판단

“당시 피고인의 서울 숙박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급박하게 결정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여러 곳의 호텔에 전화하여 객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G도 검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호텔이 빨리 안 잡힌다고 하기에 같이 예약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N호텔의 잔여객실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객실 등급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법정에서 “운전비서는 방을 직접 잡았고,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인수인계하였다”고 말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투숙할 의도로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측 주장 부합증거 전혀 존재하지 않음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상화원'

피고인 측	피해자	피고인 측 부합증거	피해자 측 부합증거
<p>2017. 8. 19 새벽경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의 객실에 들어가 침대발치 에서 피고인 부부를 내려 다보고 있었음.</p>	<p>침실에 들어간 적 없고, 당시 상화원 방문 중국 여성이 보낸 문자 확인 후 만일의 상황 대비하여 계단 앞에 있었고, 일어 나 내려가던 중 2층 방문 반투명 유리를 통해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것이 전부.</p>	<p>부인 Z의 증언 부인 Z의 증언을 들은 비서 실장 G의 증언</p>	<p>증인 T 증언 상화원 사진 전임 수행비서 A 증언 피고인 진술</p>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 '상화원'

항소심 판단

Z는 피고인의 처이고, ... (중략) 실제 상화원 현장사진에 의하면 2층 방문은 상단 부분이 반투명하여 맞은 편 사람의 실루엣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인수인계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Z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가 자고 있는 침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인 Z 증언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003

피고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차별성

피고인 진술에 대한 태도, 원심과 항소심 무엇이 다른가?

원심

1. 평가 방식

- 피고인 신문조서 검토방식
- 피고인에 대한 질의절차 없었음

2. 평가 내용

-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인정

항소심

1. 평가 방식

-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신청 채택
- 7시간에 걸친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비교, 검토

2. 평가 내용

-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부인
- 피고인도 일부 내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측 증인들의 진술 인정
- 피고인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시

왜,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 진술에 주목했는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해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 7709판결)

기준 1: 각 개별공소사실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간음 상황에 관한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는가

기준 2: 피고인 진술이 비논리적이거나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과 상충되지 않는가

기준 3: 피고인의 진술이 텔레그램 내용, 제3자 증언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가

기준1 피고인 진술 일관성에 관한 판시구조 예 (1)
- 2018. 3. 5. 밤 피고인 스스로 한 사과의 반복 관련

피고인 스스로 작성한 글이고, 문언상 의미가 명백함에도, 작성한 취지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피고인 선행 주장을 스스로 부인한 점을 배척 근거로 설시

고소 전	검찰 조사시	항소심 신문시
<p>“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검찰 증거 순번 302쪽 페이스북 캡처 출력물)</p>	<p>“그것은 성폭행이라 표현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륜과 간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였고, 본인 마음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여 그 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을 한 것이다”.</p>	<p>"합의에 의해 호감을 갖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3월 5일 그 밤에 저는 비서실이 그러한 입장으로 당장 반박성명을 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말씀올린 것이었습니다”.</p>

기준 1 피고인 진술 일관성에 관한 판시구조 예 (2)

-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반복

최초 러시아 간음 이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는 검찰 진술을 정면으로 반복하고,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을 부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부인

검찰조사시	항소심 신문시
<p>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함.</p>	<p>통상적인 연인관계 아니었다. 검찰에서 연인관계였다고 진술했던 것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함.</p>

기준 2 피고인 진술 합리성에 관한 판시구조 예

-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모순

-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 “언제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부분
- 피고인도 경선 캠프 당시 피해자를 잘 몰랐고, 수행비서로 재직 중 피해자에게 독대, 사적 감정표현을 한 사실이 없으며, 러시아에서의 성접촉 전에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출한 적이 없음을 인정한 점은 하루 밤 사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누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피고인 주장과 배치됨을 지적한 부분
- 피해자는 채용된지 한 달도 안된 수행비서신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이자 도지사, 차기 대권후보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혼여성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식 해외출장 중 미혼의 여성비서를 야심한 시각 자신의 객실로 불러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눴다는 것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움을 지적한 부분

피고인 진술과 다른 물증, 증언과의 합치성을 검토한 예(1)

1) 첫번째 피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진술의 신빙성 배척구조

- 당시 피해자의 업무부담, 업무 강도, 첫여성수행비서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피고인 출장 관련 계획표, 피해자 임명일자 및 임명 이후 피고인 업무 일정표) 내용과 모순됨
- 당시 피해자가수행비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빡빡한 출장 일정을 전부 수행하느라 몹시 피곤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부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 배척

피고인 진술과 다른 물증, 증언과의 모순점을 검토한 예(2)

2) 피해자가 2017. 7. 30. 러시아 관계이후 돌싱임을 밝히며 부담을 갖지 말라고 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구조

- 피해자가 2017. 9. 말까지도 동료 들에게 “피고인에게 이혼사실을 밝혀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고민하는 내용으로 보낸 텔레그램
- 피해자가 평소 동료들에게 도청에 근무하는 동안 이혼사실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내용으로 보낸 텔레그램 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 신빙성 배척

3) 피해자가 피해 이후 에도 피해자로서는 보낼 수 없는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피고인 진술 신빙성 배척 구조

- 피해자가 실제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 ππ 넝, 응, ㅎㅎ”)을 판결문에 직접 설시
- 위 각 문구는 젊은 세대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상적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임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 신빙성 배척

피고인 진술신빙성에 관한 항소심 판단의 의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만이 의심의 대상이 되고, 피해사실 외 평소 피해자의 행실, 사생활이 세간의 이슈가 되는 등의 2차피해가 많았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발적인 격정적 감정에 의한 합의 가능성을 추정적 주장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본 건 항소심은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물증이나 제3자 증언과의 부합성 등을 따져 그 진술가치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간접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 심리구조의 발전적 사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됨.

004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간의 차이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권력 불균형 등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성주류화조치(제14조),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제16조~제18조)

성별영향평가제도(성별영향평가법), 성인지 예산제도 등 정책과 입안에서도 이미 사용되어 온 개념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개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님

대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 어떤 의미일까?

법원이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권력관계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존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법원이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자 반성의 의미가 있음 (법률상의 의무이자 이미 존재했던 개념)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지 감수성”이 마치 성폭력 사건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 버린 것 아니냐는 잘못된 오해와 비난 ; 성인지 감수성만으로 판결?, 2차 피해 조장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와 배척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원칙과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심리 기준!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적용되고 발전시킬 것인가?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왜곡된 상에서 탈피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 주장과 진술의 합리성 및 신빙성 판단

피해자가 처한 상황,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권력의 불균형, 피해를 입게 된 경위, 사건의 전체적 맥락 등 충분한 심리가 필요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재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

안희정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의미

이번 안희정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가해자와의 엄격한 수직관계와 권력관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사건 맥락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성폭력 사건 심리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 관점을 유지하였음
: 1심 판결과 다른 점

아울러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 역시 면밀하게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의 균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함

앞으로의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이와 같은 심리와 판단이 이어지길 기대함